

알아두어야 할 가족법 상식

호주제

● 호주는 누가 되나

호주의 아들 딸, 처, 어머니, 며느리의 순이다. 그러나 호주의 맏아들이나 맏손자이면 나이가 많건 적건, 본인이 원하건 원치않건, 능력이 있건 없건 강제로 호주가 되게 했던 것을 개정하여 본인이 원치 않으면 호주승계를 포기할 수 있고 미리 분가도 할 수 있다.

전에는 호주의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면 장손이 차남이나 삼남에 우선하여 호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장손이 있더라도 차남, 삼남의 순으로 호주가 승계된다.

● 호주의 권리 의무는

호주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권리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명무실하던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권, 부양의무, 분가강제권, 각종 동의권, 청구권 등을 없앤다.

호주에게 더 주던 재산상속의 특권도 없고 호주가 되면 당연히 상속받던 분묘에 속한 금양입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 등도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상속된다.



호주제의 문제점·폐지의 당위성

●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6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三從之道)'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예외적으로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성에 관한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고 있다.

● 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 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여성이 혼인 외의 자를 데리고 혼인(또는 재혼)했을 때, 현남편의 동의와 자녀가 속한 가의 호주 동의를 얻어야 자신과 같은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킬 수 있다.

● 호주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여성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자신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 호주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차별의식을 조장하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제도가 아니며 폐지되어도 가족제도상 혼란은 없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가족정책이념(헌법 제36조)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자료제공:한국기장법률상담소-